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06.19]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 30954호(2026.06.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8층 6개동 총 5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325세대(기관추천 50세대, 다자녀가구 50세대, 신혼부부 75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85세대, 신생아 5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거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계
2026000234	01	059.9627A	59A	59.9627	20.7647	80.7274	50.6301	131.3575	54.1432	395	39	39	59	12	67	39	255	140	24
	02	059.9852B	59B	59.9852	21.7354	81.7206	50.6490	132.3696	54.1635	106	11	11	16	3	18	11	70	36	6
	합계									501	50	50	75	15	85	50	325	176	30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람.[명령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가 공용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선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선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천원)																		
약식 표기	동별(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잔금(35%)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12.10.	2027.04.10.	2027.09.10.	2028.02.10.	2028.07.10.	2028.12.10.	입주지정일		
59A	201동(1, 3, 5, 6호), 202동(1, 3, 5, 6호) 203동(1, 2, 3, 6호), 204동(1, 2, 3, 6호) 205동(1, 3, 5, 6호), 206동(1, 3, 5, 6호)	395	1층	11	111,629	263,371	375,000	5,000	13,75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31,250	
			2층	24	111,629	279,371	391,000	5,000	14,550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39,100	136,850	
			3층	24	111,629	289,371	401,000	5,000	15,05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40,350	
			4층	24	111,629	299,371	411,000	5,000	15,550	41,100	41,100	41,100	41,100	41,100	41,100	41,100	143,850	
			기준층	312	111,629	309,371	421,000	5,000	16,050	42,100	42,100	42,100	42,100	42,100	42,100	42,100	147,350	
59B	201동(2호), 202동(2호), 203동(5호) 204동(5호), 205동(2호), 206동(2호)	106	1층	4	111,671	242,329	354,000	5,000	12,7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123,900	
			2층	6	111,671	257,329	369,000	5,000	13,45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129,150	
			3층	6	111,671	267,329	379,000	5,000	13,950	37,900	37,900	37,900	37,900	37,900	37,900	37,900	132,650	
			4층	6	111,671	277,329	389,000	5,000	14,45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136,150	
			기준층	84	111,671	287,329	399,000	5,000	14,950	39,900	39,900	39,900	39,900	39,900	39,900	39,900	139,65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59.9627A				059.9852B										
약식표기				59A				59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2	특별공급 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A	59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0	3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4
	장애인	부산광역시	6	1	7	
		울산광역시	3	1	4	
		경상남도	3	1	4	
	중소기업 근로자			8	2	10
	외항선원 근로자			2	1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9	11	50	
신혼부부 특별공급			59	16	7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	3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67	18	85	
신생아 특별공급			39	11	50	
합계			255	70	325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50세대
 - 대상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을받을 본인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외항선원 근로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50세대
 - 대상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75세대
 - 대상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공급 세대수의 3% 범위: 15세대
 - 대상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85세대
 - 대상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신생아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3)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50세대
 - 대상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3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소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청약신청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만 한함)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 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약속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